

나무의사 등의 교육과정(제19조의5제5항 관련)

1. 나무의사 교육과정

분야	교 과 목	교육내용	시간		구분	
			강의	실습	필수	선택
수목분류	수목학	수목의 종류 및 분류, 수목의 조직 및 기관의 구조와 기능	12	4	O	
생리·생태	수목생리학	수목의 번식, 생육 중 빛·온도·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	10	2	O	
	산림생태학	산림 내 수목과 물리·화학적 요인들 간의 관계	8	2		O
토양	토양학	토양의 구조와 기능, 토양조사, 토양진단 및 개량, 비료의 종류 및 사용, 수목영양 진단	12	4	O	
피해관리	수목병리학	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,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·진단 및 방제	15	4	O	
	수목해충학	곤충의 종류 및 특성,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·진단 및 방제	15	4	O	
	비생물적 피해론	비생물적 피해의 종류·발생 특성·진단 및 조치	12	4	O	
	수목관리학	수목선정 및 식재, 가지치기·충전·쇠조임 등 유지관리,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, 외과수술,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	12	4	O	
농약	농약학	농약의 작용기작, 종류와 사용법	10	2	O	
기상	산림기상학	기상자료 판독, 기상측정 기구 및 사용법,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현상의 이해	8	2		O
정책 및 법규	정책 및 법규	산림보호정책, 수목진료 관련 법규, 외국의 관련 제도 및 법규	4		O	
소양교육	소양교육	양성기관별 선택교육(자료 관리 및 분석, CAD, GIS, 계약관련 법률, 안전교육 등)	10			O
계	12과목		128	32	130	30

<비고>

1. 필수과목(130시간)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2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3.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- 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: 농약학
- 나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- 다.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

2.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

분야	교육과목	교육내용	시간	
			강의	실습
수목분류	수목학	수목의 종류 및 분류	16	4
수목생리	수목생리학	수목의 번식, 생육 중 빛·온도·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과 체내 반응	16	4
토양	토양학	토양의 구조와 기능, 토양조사법, 비료의 종류 및 사용법	12	2
피해관리	수목병리학	병원체의 종류, 주요 수목병의 발생 특성 및 방제	16	6
	수목해충학	해충의 종류, 주요 수목해충의 발생 특성 및 방제	16	6
	비생물적 피해론	비생물적 피해의 종류 및 발생 특성	16	4
	수목관리학	수목선정 및 식재, 가지치기·충전·최조임 등 유지관리, 위험수목의 관리 및 제거, 외과수술, 체인톱 등 산림기계 사용법	16	10
농약	농약학	농약의 작용기작, 종류와 사용법	16	6
정책 및 법규	정책 및 법규	산림보호, 수목진료 관련 법규	2	
소양교육	소양교육	양성기관별 선택교육 (자료 관리 및 분석, CAD, GIS, 계약관련 법률, 안전교육 등)	16	6
계	10과목		142	48

<비고>

1. 교과목별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2.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 자체시험을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수료증을 발급한다.
3.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가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식물보호기사·산업기사: 농약학

- 나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(식물보호 분야): 수목생리학, 토양학
- 다. 「자격기본법」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: 수목생리학, 수목병리학, 수목해충학